# 주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가이드

| 1. | 주식 | 양도소득세 | 신고아기 | ••••• | 1 |
|----|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|
|----|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|

2. 신고 점부서류 제출하기 …… 18

# 신고 전 유의사항

 ✓ 국내와 국외 주식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와 국외자산을 <u>각각 신고하고 납부</u>해야 합니다.
(신고구분) 국내 자산 → 예정신고, 국외 자산 → 확정신고

☆ '20.1.1.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의 통산이 허용되며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에 하여야 합니다.

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무·과소 납부한 결과가 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✔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신고 (양도)한 경우로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- ✓ 주식 양도소득 세율은 중소기업·대주주·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기타자산 해당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신고 세율 적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✓ 홈택스 신고를 위해서는 <u>①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</u> <u>인증서와 ②엑셀 프로그램</u>이 필요하며 엑셀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엑셀뷰어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.
- ✔ 상장주식 대주주의 주식 거래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권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거래금액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정 여부는 거래한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 Ⅰ. 주식 양도소득

1. 증권사 HTS → 2. 국세청 홈택스→ 3. 로그인 → 4. 신고/납부 → 5. 양도소득세 → 6. 신고도움서비스 → 7. 예정신고 작성 → 8,9 기본정보(양도인/양수인) → 10.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신명세서 → 11. 세액계산 및 확인 → 12. 신고서 제출 → 13. 세금 납부하기

- 1. 증권사 HTS 배너(또는 홈페이지 배너)
- 배너에서 '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'를 선택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.

#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

- (상장) 대주주 및 소액주주(장외거래), (비상장) 모든 주주 -

2020년 2월은 작년 하반기(7월~12월)에 주식 등을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.
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·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\*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('19.7.1.~'19.12.31.양도분)

| 구분      | 코스피시장   | 코스닥시장   | 코넥스시장  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지분율     | 1%이상 또는 | 2%이상 또는 | 4%이상 또는 |
| 또는 시가총액 | 15억원 이상 | 15억원 이상 | 10억원 이상 |

상담문의 국번없이 126번 전자신고 가이드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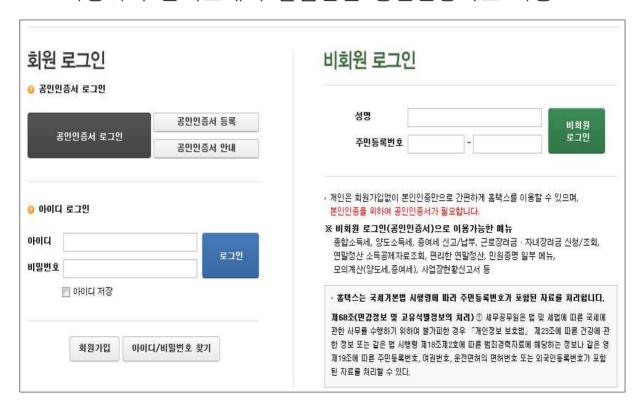
# 2.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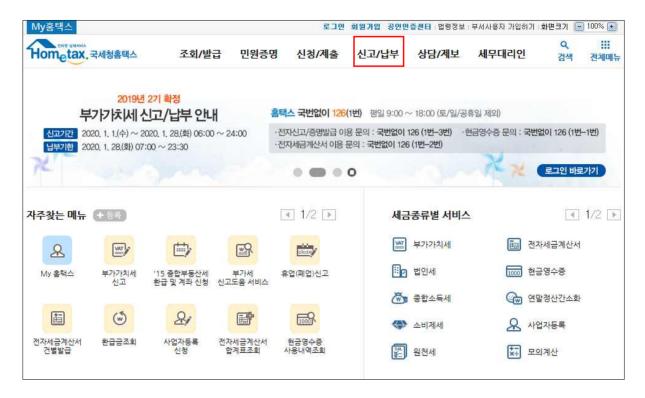
### 3. 로그인(회원 또는 비회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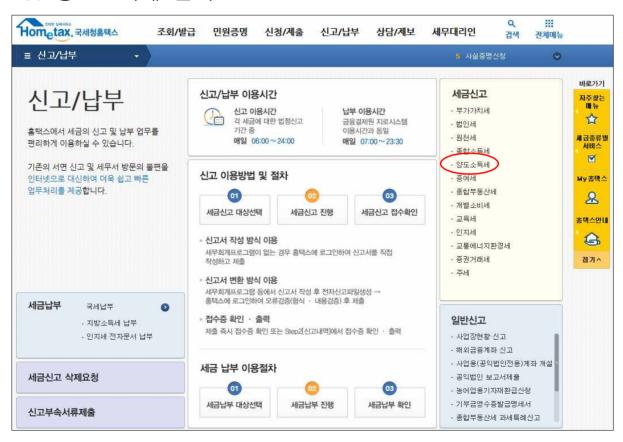
- 로그인을 위해서는 **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**가 필요하며 ①회원 또는 ⓒ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합니다.
- 공인인증서는 범용이나 용도가 제한된 은행, 증권, 보험용도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도 가능



# 4. 신고/납부 선택



# 5. 양도소득세 선택



# 6. 신고도움 서비스



# 6-1.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물건 조회



- ① 신고안내연월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. (예시) 상반기 양도분 → 금년 8월, 하반기 양도분 → 다음해 2월
- ②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경우 발송된 신고안내문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. [MY NTS]-[우편물 및 소명안내]

# 6-2. 주식등 거래내역 조회(※ 상장법인 대주주만 해당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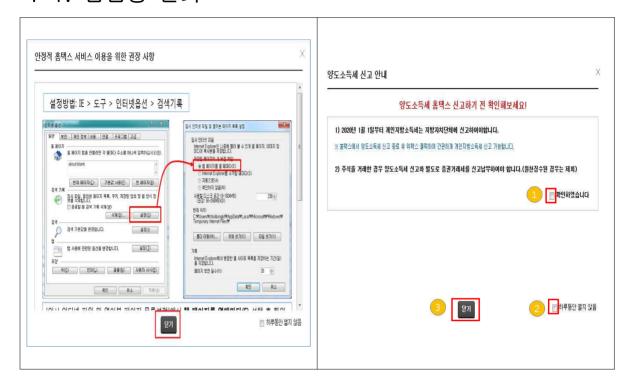


- ①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경우 증권사로 부터 수집된 주식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② 거래기간과 거래구분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③ 1)~3) 유형 중 사용 목적에 따라 다운로드 버튼을 선택합니다.
  - ☞ 1) 증권사 원본자료 다운로드
    - 2)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업로드용
    - 3) 주식거래내역 업로드용
    - ※ 2),3)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 업로드용 서식에 일부 항목을 미리채움(Pre-filled)하여 제공합니다.

### 7. 예정신고 작성



### 7-1. 팝업창 닫기



# 8. 기본정보 입력(양도인)



- ① 국내/국외 자산을 구분합니다.
- ② 양도자산을 예정-국내주식으로 선택합니다.
- ③ 양도연월(2019년 하반기)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4)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.
- ⑤ 화면 이동을 위해 [저장 후 다음 이동] 버튼을 클릭합니다.

# 9. 기본정보 입력(양수인)



- ① 양수인의 납세자번호유형을 주민등록번호로 선택합니다.
  - ☞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기본사항을 조회한 후 성명, 지분을 입력합니다.
    - ※ 증권시장안에서 거래하는 상장주식 등 양수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.
- ② 양도자와의 관계가 '무관계'가 아닌 경우,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양수자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.

- ③ 입력이 누락된 곳이 없는지 확인한 후,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④ 신고대상으로 선택한 양수인 중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양수인 목록에서 (☑)클릭 후 선택내용 수정 버튼을 선택하여 수정할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.
- ⑤ 다음 화면 이동을 위해 [저장 후 다음 이동] 버튼을 클릭합니다.

### 10.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



- ① 주식등 종목명(또는 코드번호), 사업자등록번호, 양도물건 종류(코드), 세율구분, 주식등종류코드, 취득유형, 취득 유형별 양도주식수를 입력합니다.
- ② 양도일자, 주당양도가액, 양도가액, 취득일자, 주당취득가액, 취득가액, 필요경비, 양도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.(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과 감면종류/감면율 까지 입력)
  - \* 과세이연 특례를 신청한 경우 과세이연 여부에 '여'를 선택합니다.
- ③ 입력이 누락된 곳이 없는지 확인한 후,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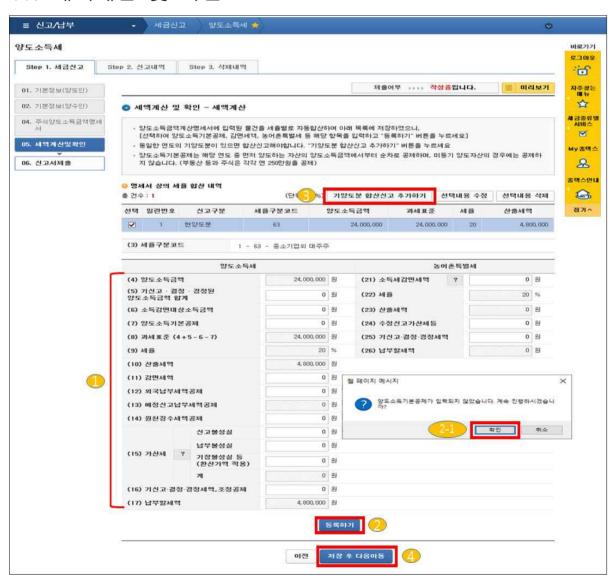
# 10-1. 양도자산 목록 및 (대주주)주식거래내역서



• ④ 신고대상으로 선택한 양도자산 중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목록에서 (☑)클릭 후 선택내용 수정 버튼을 선택하여 수정할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.

- ⑤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시 다량의 양도자산을 등록 하기 위해서 업로드 양식(엑셀)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.
  - ☞ 업로드서식, 작성방법, 양도물건종류별 세율코드 및 주식 종류 확인가능
- ⑥ 대주주 주식거래내역서 입력대상인 양도자산을 선택한 이후 [주식거래내역서 입력]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⑥-1 확인 버튼을 클릭 후 ⑥-2 주식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등록·저장합니다.
- ⑦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목록에서 신고대상을 확인하고 [저장후 다음 이동]을 클릭합니다.

### 11. 세액계산 및 확인



# 세율구분코드별 자료추가



#### - 국내분

| 선택 | 세뮬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율구분 | 세율        |
|----|--|------|-----------|
| 0  | 2년이상 보유(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년이상 보유), 기타, 국외자산 | 10   | 6 ~ 42 \$ |
| 0  | 2년이상 보유 비사업용토지,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      | 11   | 16 ~ 52 9 |
| 0  | 1년이상 ~ 2년미만 보유(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)(40%)    | 15   | 40 9      |
| 0  | 1년미만 보유 토지·건물 및 부동산 권리(50%)            | 20   | 50 °      |
| 0  |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                       | 21   | 50 '      |
| 0  | 미등기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   | 70        |
| 0  | 1년이상 ~ 2년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(40%)             | 35   | 40        |
| 0  | 1년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(50%)                    | 36   | 50        |
| 0  | 1년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압주권(40%)               | 40   | 40        |
| 0  | 비상장주식(중소기업(대주주), 중소기업외 소액주주)           | 41   | 20        |
| 0  | 비상장주식 (중소기업(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))       | 42   | 10        |
| 0  | 1년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(10% 추가)        | 51   | 16 ~ 52   |
| 0  | 1년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(입주권보유)(10% 추가) | 52   | 16 ~ 52   |
| 0  | 1년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(40%)           | 53   | 40        |
| 0  | 1년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(입주권보유)(40%)    | 54   | 40        |
| 0  | 1년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3주택(20% 추가)        | 55   | 26 ~ 62   |
| 0  | 1년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3주택(입주권보유)(20% 추가) | 56   | 26 ~ 62   |
| 0  | 1년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3주택(40%)           | 57   | 40        |
| 0  | 1년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3주택(입주권보유)(40%)    | 58   | 40        |
| 0  | 상장주식(중소기업(대주주), 중소기업외 소액주주)            | 61   | 20        |
| 0  | 상장주식 (중소기업(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))        | 62   | 10        |
| •  | 중소기업외 대주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    | 20 ~ 25   |
| 0  | 대기업 대주주 1년마만 보유주식                      | 70   | 30        |
| 0  | 파생상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1   | 10        |
| 0  |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| 92   | 20        |
| 0  |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(중소기업)      | .93  | 20        |
| 0  |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(중소기업외)     | 94   | 20 ~ 25   |

#### - 국외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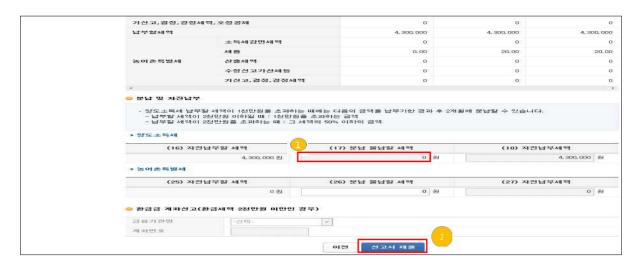
| 선택 | 세율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율구분 | 세율    |
|----|--|------|-------|
| 0  | 2년이상 보유(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년이상 보유), 기타, 국외자산 | 10   | 6~42% |
| 0  | 비상장주식(중소기업(대주주), 중소기업외 소액주주)           | 41   | 20 %  |
| 0  | 비상장주식 (중소기업(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))       | 42   | 10 %  |

선택하기 닫기

- ① 양도소득금액, 과세표준, 산출세액을 확인합니다.
- ② 입력이 누락된 곳이 없는지 확인한 후,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②-1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팝업되며, 양도소득 기본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.(한도 연간 250만원)
- ③ [기양도분 합산신고 추가하기] 버튼을 클릭하여 기양도 신고서 존재여부를 확인합니다.
  - ☞ 기신고서의 양도자산이 단일세율대상인 경우 합산신고가 불필요하며, 누진세율인 경우 반드시 합산신고가 필요합니다.
- ④ 다음화면 이동을 위해 [저장 후 다음 이동] 버튼을 클릭합니다.

# 12. 신고서 제출





• 분납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. ☞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: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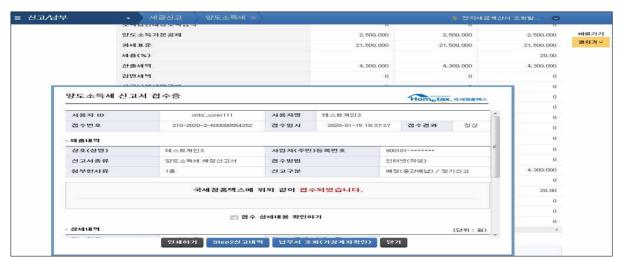
☞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: 그 세액의 50%이하의 금액



• 메시지 확인 후 신고서 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• 신고서 접수 완료



# 13. 세금 납부하기



• ①접수 상세내역 확인하기 클릭 후 ②Step 2 신고내역 선택

# 13-1.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



# 13-2. 납부하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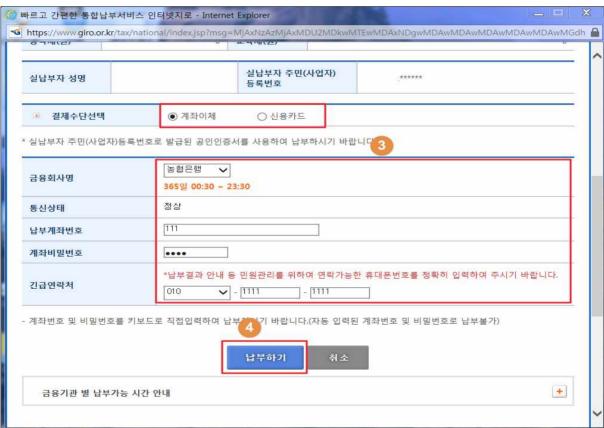
• ①납부세액 입력 후 ②납부하기 클릭하세요.

# 13-3. 납부금액 재확인 메시지 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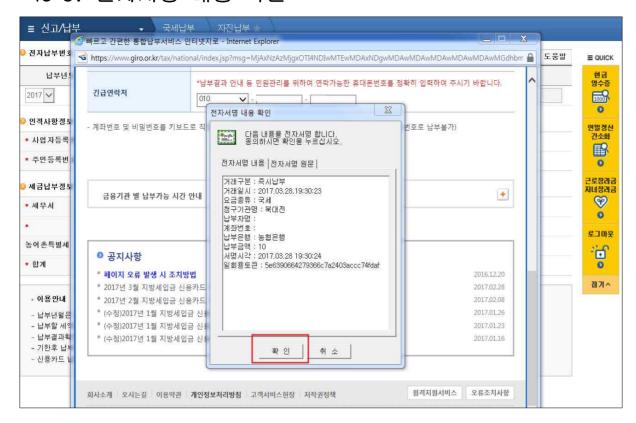
# 13-4. 국세 인터넷 납부





• ①모두동의 클릭 후 ②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선택, ③납부 내역을 입력 후 ④납부하기를 클릭하세요.

# 13-5. 전자서명 내용 확인



# 13-6. 납부결과 확인(완료)



# Ⅱ. 신고 첨부서류 제출하기

- 1. 증권사 HTS → 2. 국세청 홈택스 → 3. 로그인 → 4. 신고/납부 →
- 5. 신고부속서류 제출  $\rightarrow$  6. 신고부속서류 제출하기  $\rightarrow$  7. 부속서류 업로드

### 1. 증권사 HTS

#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

- (상장) 대주주 및 소액주주(장외거래), (비상장) 모든 주주 -

2020년 2월은 작년 하반기(7월~12월)에 주식 등을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.
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·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\*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('19.7.1.~'19.12.31.양도분)

| 구분      | 코스피시장   | 코스닥시장   | 코넥스시장  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지분율     | 1%이상 또는 | 2%이상 또는 | 4%이상 또는 |
| 또는 시가총액 | 15억원 이상 | 15억원 이상 | 10억원 이상 |

상담문의 국번없이 126번 전자신고 가이드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



• 4.신고/납부 화면까지는 '주식 양도소득' 화면과 동일

# 5. 신고부속서류 제출



# 6. 신고부속서류 제출하기



# 7. 부속서류 업로드



※ 부속서류는 핸드폰으로 촬영한 파일로도 첨부가 가능합니다.